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일,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국회의원 문진석)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 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국가 간 검색면제 프로그램 근거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검색면제 프로그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국가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의 결과가 외국공항에서의 입국 또는 환승에 필요한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보안검색 관련 정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 결과 2.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제17조의3 (생략)	<u>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검색 결과와 운송정보 등을 제공받았거나, 해당 외국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동등 이상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u> 제17조의3·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행 환승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 정책으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제도(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 및 승객·휴대물품 검색 면제(OSS, One-Stop Security)를 운영 중에 있음.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제도(IRBS)란 항공기 도착 전 출발 공항에서 촬영한 위탁수하물 X-ray 영상을 환승공항으로 전송하여 비행 중 원격 검색을 실시하는 제도로 승객은 짐 수취 및 재위탁 과정, 세관검사가 생

략되어 환승시간을 약 20분 단축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8월부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¹⁾ 미국을 상대국으로 현재 영국(히드로-달라스, 2025.7.~), 호주(시드니-LA, 2025.4.~), 한국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제도를 시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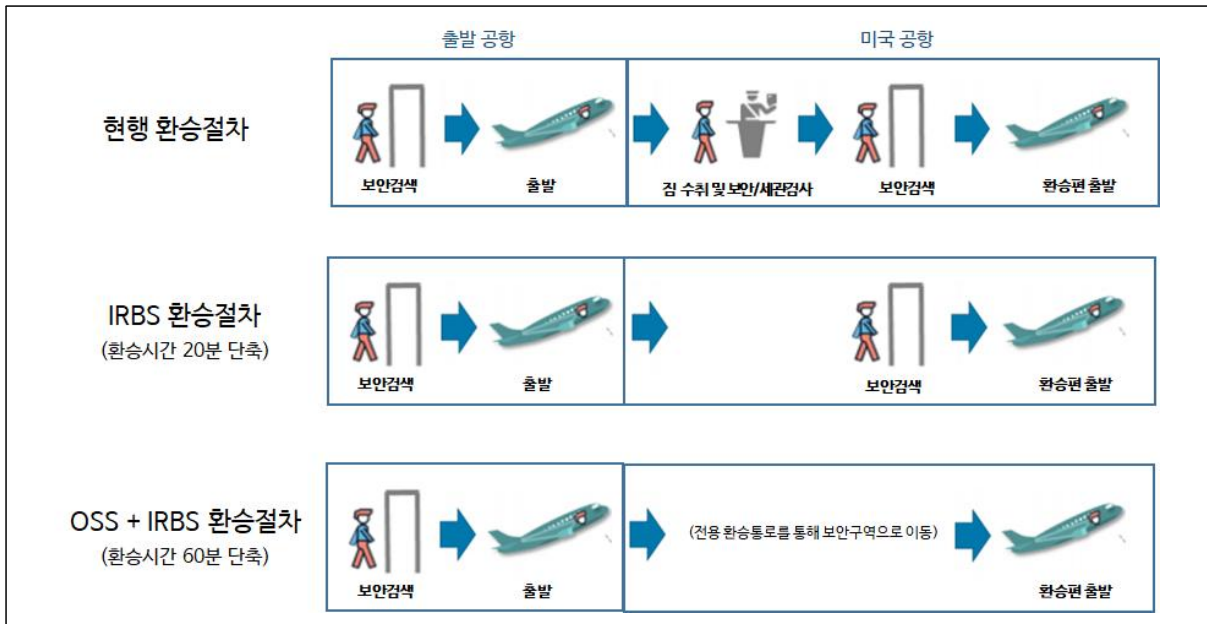
승객·휴대물품 검색 면제(OSS, One-Stop Security)는 보안이 확보된 외국 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이 미국에서 환승 시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환승검색을 면제하는 제도로, 이 경우 OSS 승객 전용 패스트트랙을 통해 보안검색 없이 입국심사만 받고 신속히 환승이 가능하여 환승시간을 약 40분 단축할 수 있음.

현재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2025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OSS를 개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인천), 호주(시드니), 일본(하네다), 케냐(나이로비), 스페인(퐁타카나) 6개 공항이 후속 OSS 후보지로 미국과 협상 중에 있음. 인천공항은 한-미 규정 비교평가, 공항 현장실사, 양국 간 보안성 차이점 해소계획 및 규모 등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만약 IRBS와 OSS가 함께 시행될 경우 환승시간은 약 60분 단축되어 미국행 승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대한항공, 「인천-애틀랜타 노선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 시행」, 2025.8.13.

【 OSS 및 IRBS 시행 효과 비교 】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²⁾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³⁾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공보안법」에는 상대국 간 환승검색 면제 제도에 필요한 정보제공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에서는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제도를 위하여 승객에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수기 접수로 인한 승객의 불편이 우려되고, 승객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없이 보안검색 면제 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에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음.⁴⁾

이에 개정안은 「항공보안법」에 국가 간 보안검색 면제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제도 시행 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탑승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보안검색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인천공항의 OSS 도입을 대비하여 국적 항공사와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제22대 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025.10.27.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보안검색의 면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엄격히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 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에 따르면 승객과 기내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에 대해서 ①다른 체약국과 협력하여 적절히 실행된 검증절차를 수립하고, ②해당 승객과 수하물이 출발공항에서 적정 수준으로 검색되며, ③환승공항의 출발 항공기까지 허가되지 않은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었음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색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7(항공보안) 】

4.4 승객 및 기내 휴대수하물 검색방식

각 체약국은 상업 항공 운송의 환승 승객과 기내 휴대 수하물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검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체약국과 협력하여, 적절히 실행된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해당 승객과 기내 휴대 수하물이 출발 공항에서 적정 수준으로 검색되고, 환승 공항의 출발 항공기까지 허가되지 않은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었음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5 위탁수하물 검색방식

각 체약국은 환승 위탁수하물이 상업용 국제항공운송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에 검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체약국과의 협력하여, 수립된 검증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해당 수하물이 출발공항에서 검색되고 환승공항의 출발 항공기까지 허가되지 않은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었음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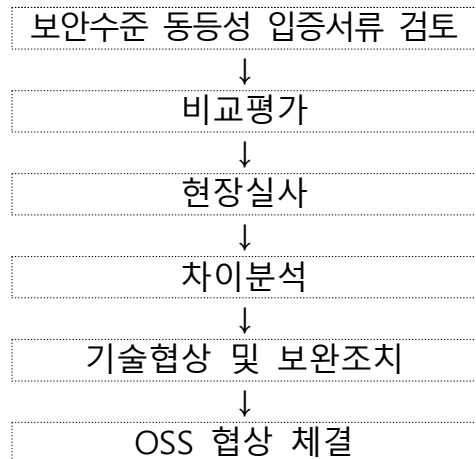
또한 미국과의 OSS 참여 공항 조건에 따르면, 미국과 동등한 보안성, 첨단기술, 절차 등을 확보하고 위해물품 반입금지 목록이 미국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안수준 동등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외국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OSS 참여 조건 및 선정 절차 】

< 미 OSS 참여 공항 조건 >

- 미국과 동등한 보안성, 첨단기술, 절차 확보
 - * 첨단 검색장비, 알고리즘, 규정·매뉴얼 등
- 非 검색 승객과 섞이지 않을 것
- 모든 검색장에서 폭발물탐지장비 사용 가능
- 위해물품 반입금지 목록이 미국 기준에 부합
- 내부 테러위협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 한미합동 불시평가 등 참여

< 선정 절차 >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협정 및 「국제 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안검색 면제는 ①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발 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동등 이상임을 인정하고, ②해당 승객과 수하물이 출발 공항에서 적정수준으로 검색되며, ③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④ 해당 국가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검색 결과와 운송정보 등을 제공받는 등

우리나라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의 결과가 외국공항에서의 입국 또는 환승에 필요한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승객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의 적용범위와 보안검색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외국공항에서 실시되는 입국 또는 환승 검색”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안 제17조의2제1항 중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보안검색 관련 정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칭한 ‘보안검색 관련 정보’가 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⁵⁾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조정

5) 제17조의2(국가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의 결과가 외국공항에서의 입국 또는 환승에 필요한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보안검색 관련 정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 결과
2.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검색 결과와 운송정보 등을 제공받았거나, 해당 외국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동등 이상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17조의2(개정안의 제17조의3), 제17조의3(개정안의 제17조의4)의 조문 번호만 변경하고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문의 조문 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2(국가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u>
<u>제17조의2(상용화주) ① ~ ④ (생략)</u>	<u>제17조의3(상용화주)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u>
<u>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 ③ (생략)</u>	<u>제17조의4(상용화주의 지정취소)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u>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우리나라도 한미 원스톱 항공보안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항공보안 신뢰도를 높이고 검색의 효율성과 승객편의 제고를 위해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2) 한국항공협회 의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허용을 통해 입국·환승 소요시간 단축 및 항공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미국 교통안전청(TSA)에서는 동의자 한정 수하물 검사 면제 방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2025.3.)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지속할 경우 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IRBS 단계적 도입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복기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내용, 타국과의 보안수준 동등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은 외국공항에서의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해 실시되는 검색의 면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의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제11호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안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17조의5(중전의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10.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제15조부터 제17조까지</u> 및 <u>제17조의2</u> 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

<신 설>

제17조의2(국가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의
결과가 외국공항에
서의 입국 또는 환
승에 필요한 검색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하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
공운송사업자로 하
여금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공
항의 공항운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

제17조의2(환승 승
객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의 면제) 공항
운영자는 외국 공
항을 출발하여 국
내 공항에서 환승
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
조 및 제17조에 따
른 보안검색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
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
안검색을 실시하
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 결과

2.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운송 정보

3.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부 또는 외국공항의 공항운영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검색 결과와 운송정보 등을 제공받았거나, 해당 외국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이 법에서 정

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신 설>

하는 수준과 동등 이상임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u>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 검색의 결과</u> <u>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u> <u>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u>
<u>제17조의2</u>(상용 화주) (생략)	<u>제17조의3</u>(상용 화주)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u>제17조의4</u>(상용 화주)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u>제17조의3</u>(상용 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u>제17조의4</u>(상용 화주의 지정취소)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	<u>제17조의5</u>(상용 화주의 지정취소) ① -- ----- ----- ----- ----- ----- -----.

취소하여야 <u>한다</u>. 1. (생략) 2. <u>제17조의2제1항</u> 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u>제17조의2제2항</u> 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③ (생략)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17조의3제1항</u> 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3·4.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의4제1항</u> ----- ----- 3. <u>제17조의4제2항</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청문)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의5제1항</u> ----- ----- 3·4. (현행과 같음)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11호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 ----- ----- ----- -----.
<u>제17조의2</u> (생략)	<u>제17조의4</u>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u><신설></u>	<u>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u>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신 설>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

	<u>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1. <u>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u> 2. <u>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u> 3. <u>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u>
<u>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u>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u>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u> 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③ (생략)	<u>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u>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의4제1항</u>----- ----- 3. <u>제17조의4제2항</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의3제1항</u> 에 따른 상용 화주 지정의 취소	2. <u>제17조의5제1항</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